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9
----------	------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한민수 · 조인철 · 송옥주
황 희 · 이연희 · 이병진
황정아 · 박해철 · 임오경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과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학기술 주요 정책 · 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2. ----- -----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신 설></u>	<u>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u>
	<u>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u>
<u>타. ~ 서. (생 략)</u>	<u>파. ~ 어. (현행 타목부터</u> <u>서목까지와 같음)</u>